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2438 경정거부처분 취소
	2019아3745(병합) 위헌법률심판제청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본안청구: 피고가 2019. 1. 28. 원고 A, B, C에 대하여 한, 2019. 1. 31. 원고 D, E, F, G, H에 대하여 한, 2019. 2. 5. 원고 I, J,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한, 2019. 2. 7. 원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에 대하여 한, 2019. 2. 11. 원고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하여 한, 2019. 2. 12. 원고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하여 한, 2019. 2. 13. 원고 CD, CE, CF, CG에 대하여 한, 2019. 2. 14. 원고 CH, CI,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1]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8. 1.경 사용검사가 내려진 [redacted]시 [redacted]구 CQ 건물(공동주택 686세대, 오피스텔 276실) 중 별지 '분양건물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된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9.경부터 2019. 1.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별지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및 경정거부처분 목록'의 '취득세 신고일', '납부한 취

1) 아래 판시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적용된 법은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므로,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원고들의 신청취지는 오기로 보이고, 이하 이 부분 신청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득세'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에 이르기까지 각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6억 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와 같이 1.0%의 취득세, 0.1%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취득세 신고 · 납부내역 및 경정거부처분 목록'의 '거부처분 일자'란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청구

원고들은 주거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조건에 있는 '주택'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신청

지방세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여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따라 부과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율이 적용됨에도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낮은 세율의 우대조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본안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입법자가 명백히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형성의 재량 내에서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내려진 처분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섣불리 평등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거안정,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하여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전문에서는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주택'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준주택'에 해당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 세율을 낮게 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감경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감경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감경대상을 정하고 있는 이상 감경규정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경대상이 과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이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반드시 이들을 동등하게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취득세율 감경대상을 주택법상 주택의 경우로 한정하고 준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곧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건축법 제38조),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은 그 정확한 소유·이용 관계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구별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취득세율 감경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등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원고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21.

22.

23.

24.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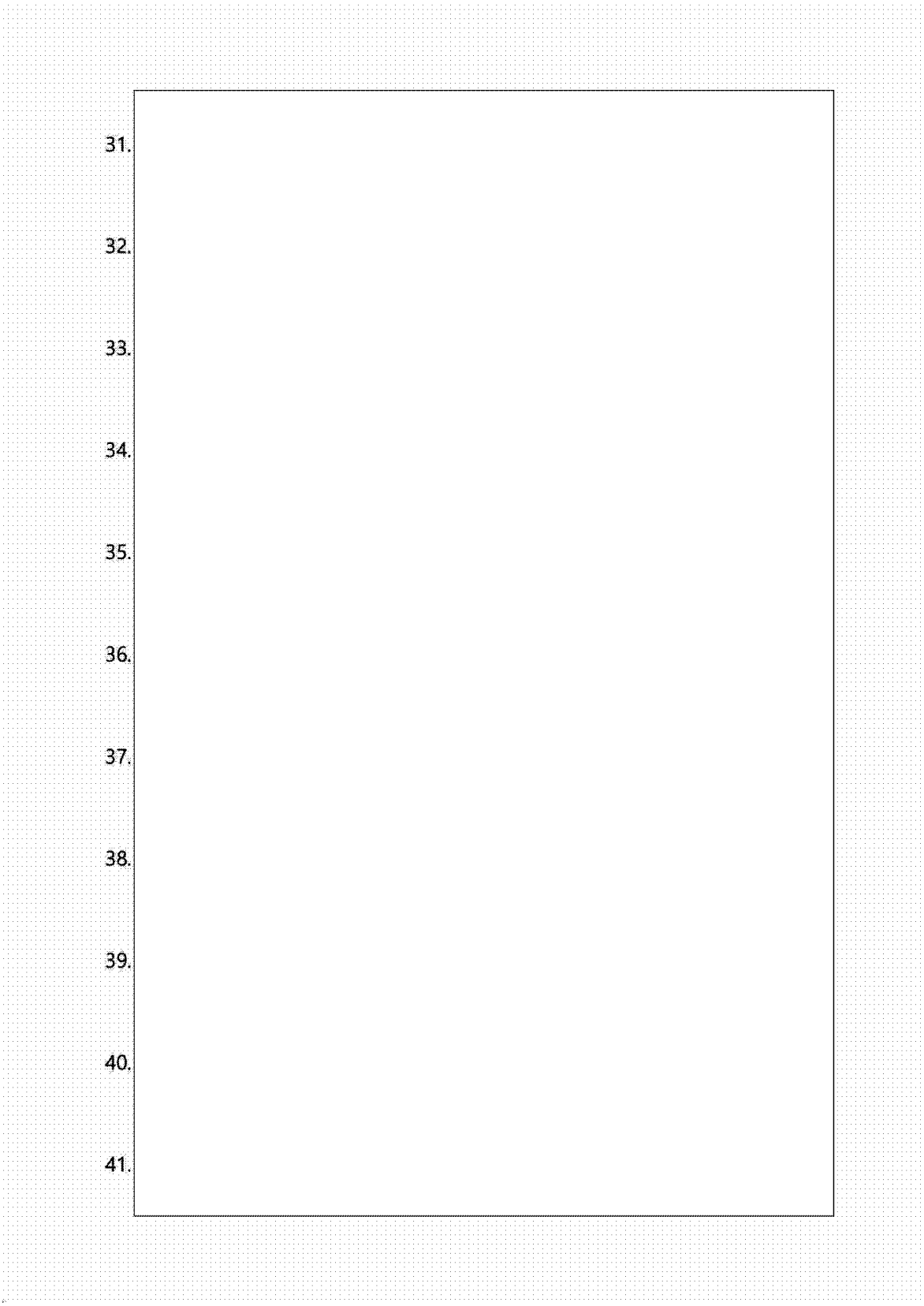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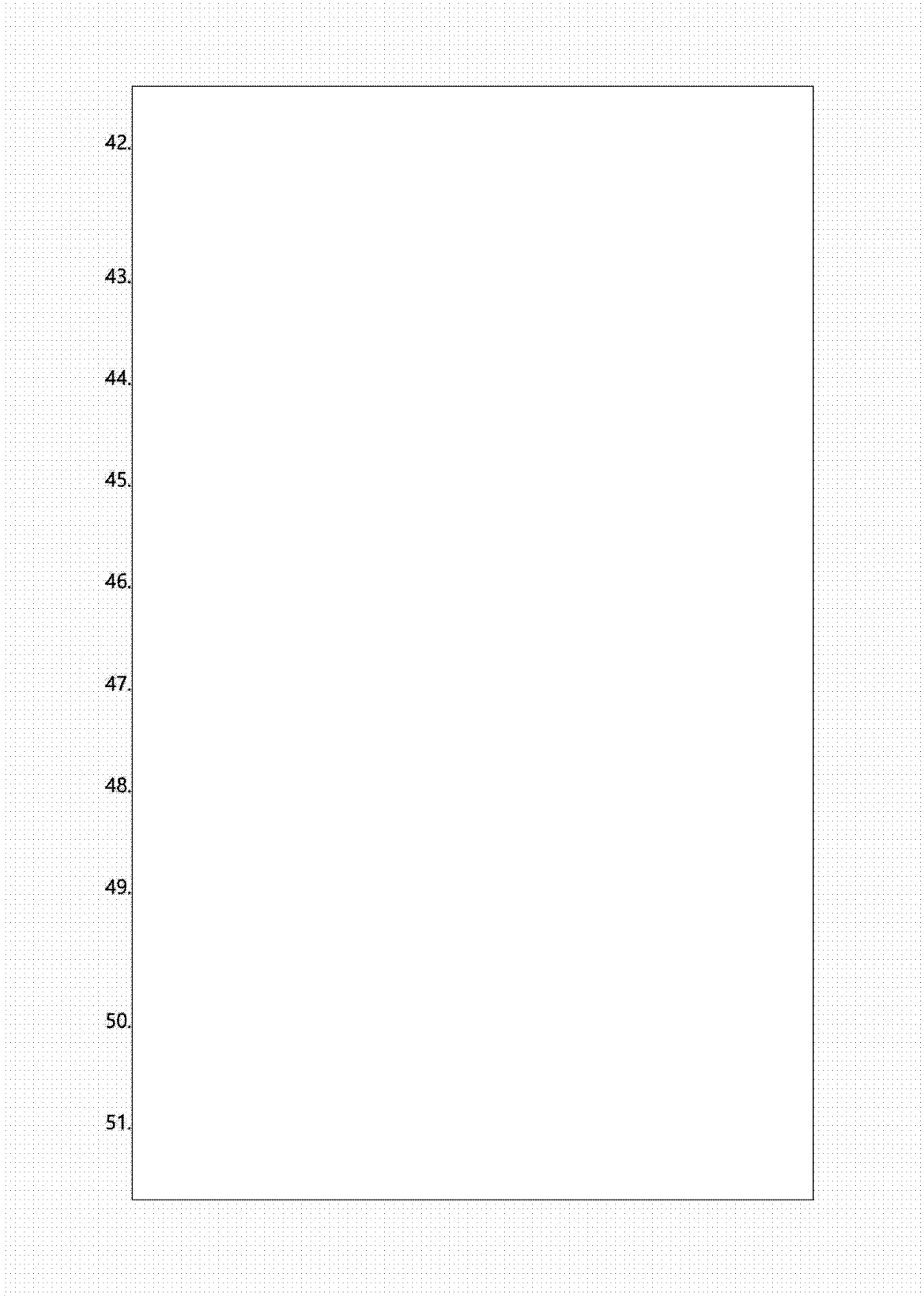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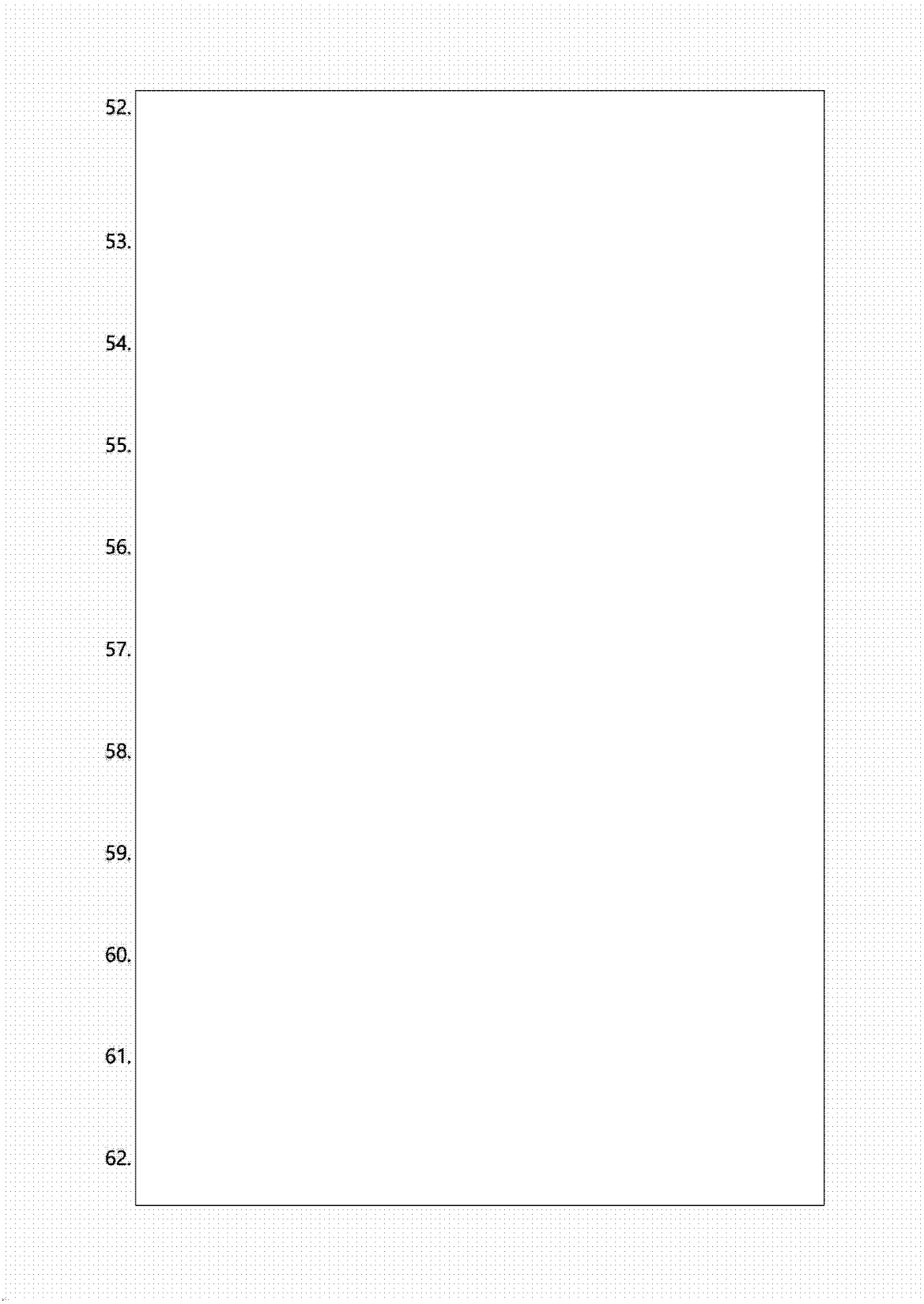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63.

64.

65.

66.

67.

68.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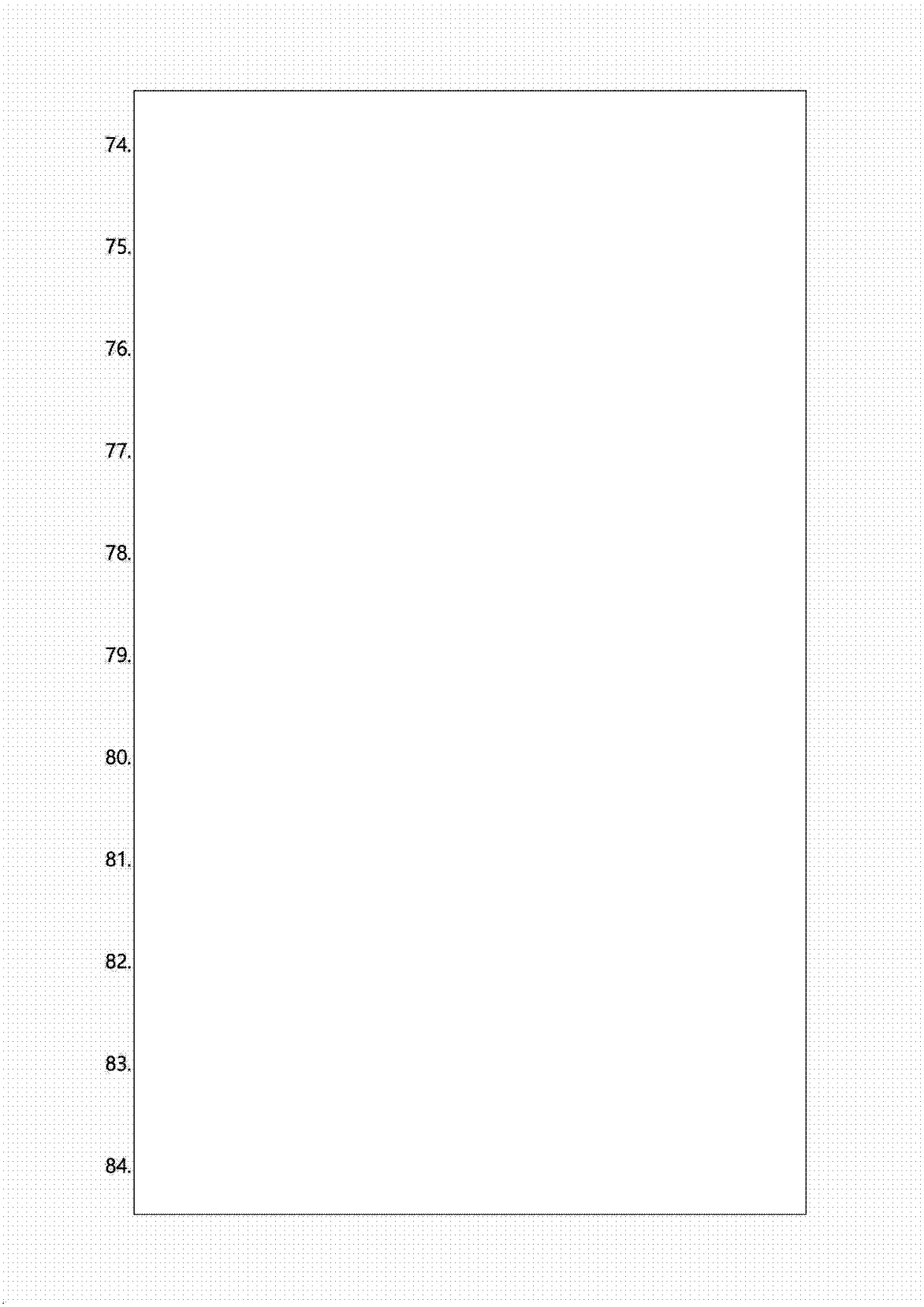
7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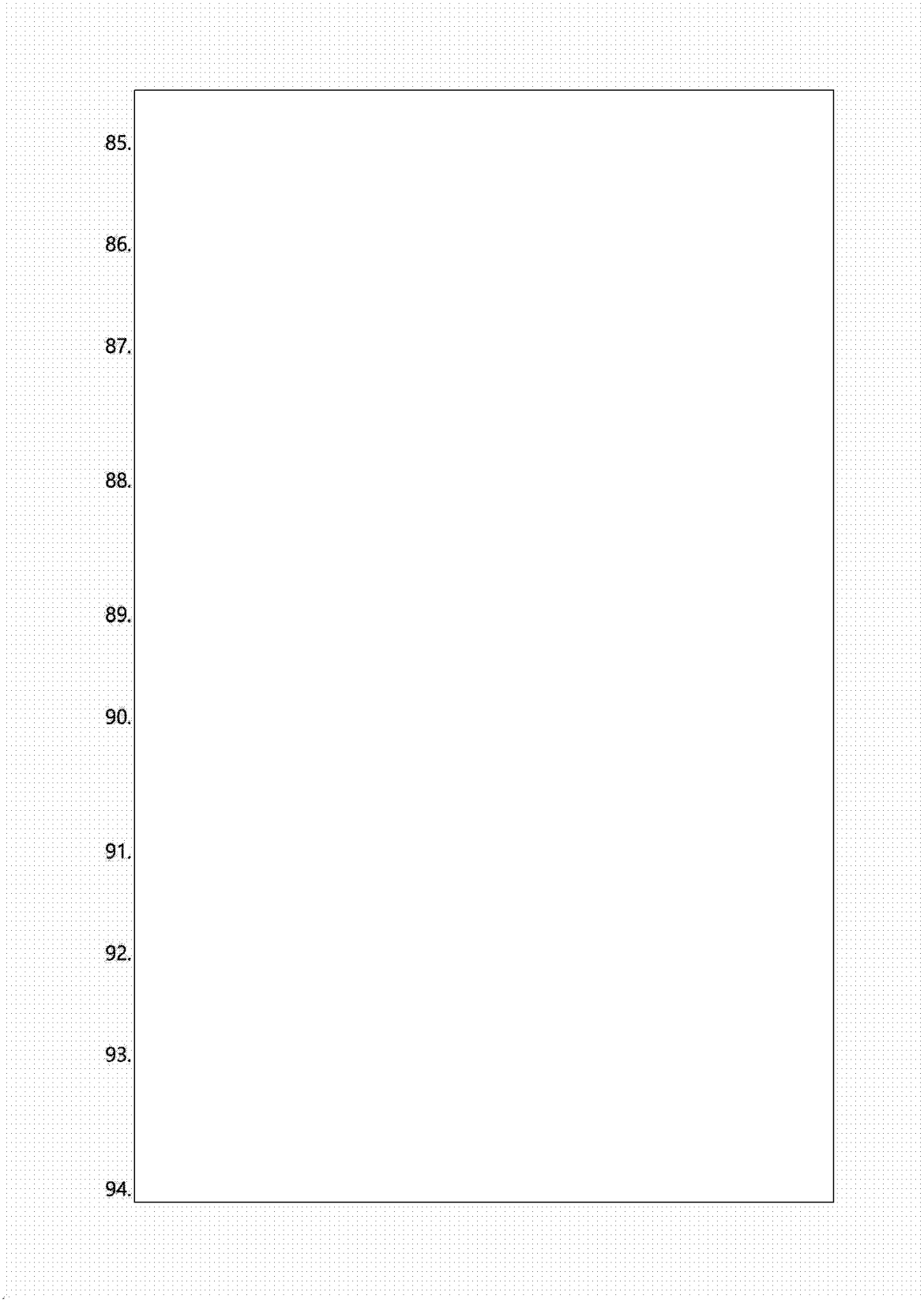
72.

7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분양건물 목록

순번	원고	분양받은 호실	
		동	호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취득세 신고 · 납부내역 및 경정거부처분 목록

순번	원고	취득세 신고일	납부한 취득세 (원)	거부처분 일자
1		2018. 10. 12.	17,891,290	2019. 1. 28.
2		2018. 10. 12.	16,829,060	2019. 1. 31.
3		2018. 10. 12.	17,004,470	2019. 1. 31.
4 5		2018. 11. 6.	17,354,590	2019. 1. 31.
6		2018. 11. 21.	17,184,250	2019. 2. 11.
7		2018. 10. 12.	17,184,250	2019. 1. 31.
8		2018. 11. 13.	17,885,810	2019. 2. 14.
9		2018. 10. 30.	17,359,640	2019. 2. 5.
10 11		2018. 10. 12.	18,069,990	2019. 2. 5.
12		2018. 12. 17.	17,359,640	2019. 2. 11.
13		2018. 10. 12.	19,863,990	2019. 2. 5.
14		2018. 12. 21.	20,094,140	2019. 2. 14.
15		2018. 10. 15.	18,484,140	2019. 1. 28.
16		2018. 10. 8.	19,182,590	2019. 2. 11.
17		2018. 10. 12.	17,870,450	2019. 1. 28.
18		2018. 11. 6.	17,518,270	2019. 2. 5.
19 20		2018. 11. 13.	19,605,030	2019. 2. 14.
21		2018. 10. 12.	17,535,030	2019. 2. 5.
22		2018. 11. 21.	18,254,140	2019. 2. 11.
23 24		2018. 11. 21.	20,048,310	2019. 2. 14.
25		2019. 1. 11.	17,714,800	2019. 2. 14.
26		2018. 11. 21.	17,714,800	2019. 2. 11.
27		2018. 11. 21.	19,362,370	2019. 2. 14.
28		2018. 11. 6.	18,438,310	2019. 2. 11.
29		2018. 11. 27.	18,484,140	2019. 2. 14.
30		2018. 10. 8.	20,462,480	2019. 2. 11.
31		2018. 10. 24.	19,518,640	2019. 2. 5.
32 33		2018. 11. 21.	18,622,480	2019. 2. 11.
34		2018. 11. 27.	19,910,140	2019. 2. 11.
35 36		2018. 11. 6.	18,254,140	2019. 2. 11.
37		2018. 10. 25.	19,500,210	2019. 2. 11.
38		2018. 11. 27.	20,186,310	2019. 2. 11.
39		2018. 11. 13.	18,069,990	2019. 2. 12.
40		2018. 11. 21.	20,600,310	2019. 2. 13.
41		2018. 9. 18.	18,806,650	2019. 2. 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42		2018. 12. 4.	18,069,990	2019. 2. 11.
43		2018. 11. 21.	19,219,990	2019. 2. 13.
44 45		2018. 9. 28.	18,069,990	2019. 2. 7.
46		2018. 11. 21.	21,014,650	2019. 2. 11.
47		2018. 10. 12.	17,513,120	2019. 2. 7.
48		2018. 12. 28.	17,701,650	2019. 2. 11.
49		2018. 10. 12.	18,759,830	2019. 2. 7.
50		2018. 10. 12.	17,885,830	2019. 2. 7.
51		2018. 10. 12.	17,535,030	2019. 2. 7.
52		2018. 10. 12.	18,802,532	2019. 2. 7.
53		2018. 12. 13.	17,359,640	2019. 2. 11.
54 55		2018. 10. 12.	17,493,040	2019. 2. 7.
56		2018. 11. 13.	17,359,640	2019. 2. 13.
57 58		2018. 10. 12.	17,894,550	2019. 2. 7.
59 60		2018. 11. 6.	20,324,140	2019. 2. 12.
61		2018. 12. 26.	19,090,590	2019. 2. 11.
62 63		2018. 11. 21.	17,535,030	2019. 2. 12.
64		2018. 10. 12.	17,748,140	2019. 2. 7.
65		2018. 10. 16.	17,894,590	2019. 2. 7.
66		2018. 10. 15.	20,278,310	2019. 2. 11.
67		2018. 11. 27.	18,074,370	2019. 2. 12.
68 69		2018. 11. 6.	20,416,310	2019. 2. 11.
70 71		2018. 11. 26.	17,714,800	2019. 2. 11.
72		2018. 11. 6.	17,675,200	2019. 2. 11.
73 74		2018. 10. 8.	17,484,800	2019. 2. 12.
75		2018. 11. 6.	20,002,310	2019. 2. 7.
76 77		2018. 10. 30.	17,714,800	2019. 2. 7.
78		2018. 10. 12.	19,408,370	2019. 2. 7.
79		2018. 10. 12.	19,864,140	2019. 2. 12.
80		2018. 10. 12.	18,622,480	2019. 2. 7.
81 82		2019. 1. 18.	18,254,140	2019. 2. 12.
83		2018. 9. 19.	17,876,130	2019. 2.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84 85		2018. 11. 28.	18,254,140	2019. 2. 11.
86		2019. 1. 30.	19,036,140	2019. 2. 12.
87 88		2018. 11. 13.	18,254,140	2019. 2. 5.
89		2018. 10. 12.	20,646,650	2019. 2. 11.
90		2018. 11. 20.	18,438,310	2019. 2. 11.
91		2018. 11. 6.	18,069,990	2019. 2. 11.
92		2018. 10. 16.	20,784,650	2019. 2. 11.
93		2018. 11. 12.	17,995,620	2019. 2. 13.
94		2018. 11. 13.	18,069,990	2019. 2. 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text{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text{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times \frac{\text{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text{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08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끝.